

명예회장위촉규정

제 정: 2019.09.16.(이사회 승인)
최근개정: 2022.08.25.(이사회 승인)

제1조 (목적) 본 규정은 학회 정관 제19조(명예회장)에 명시된 명예회장의 위촉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예우) 명예회장의 예우는 본 학회 역대회장에 준한다.

제3조 (신의성실) 명예회장은 본 학회의 일원으로써 학회의 책임과 의무 및 신의에 합당하고 성실하게 행동하여야 한다.

제4조 (자격) 명예회장은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.

- ① 추천서가 제출되는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, 만65세 이상이며, 본 학회 회장을 역임하지 않은 자로써, 학회 입회 만15년이 초과되고, 학회 발전과 우리 철도 발전에 기여 및 공헌이 상당하며, 철도인의 존경을 받아야 한다.
- ② 명예회장 추천일 기준 권리회원이어야 한다.
- ③ 학회 입회일 이후 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적이 있어서는 안 되며, 또한 철도인으로써 도덕적, 학술적, 기술적 비난 및 국민적 상식으로부터 비난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.

제5조 (절차) 명예회장 위촉은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.

- ① 전임회장 3인, 감사 1인, 부회장 3인, 및 이사 3인의 자필 서명된 명예회장 추천서(별첨 서식)를 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- ② 회장은 재적이사 2/3이상(위임장 포함)이 출석한 이사회에서 제출된 명예회장 추천서를 공람한 후, 별도의 토론 없이 즉시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여 이사회 참석 2/3이상의 찬성으로 명예회장의 선출을 의결한다.
- ③ 위촉장의 수여 일정은 회장이 정한다.

제6조 (자격상실 및 해임) 명예회장의 자격상실 및 해임은 다음에 따른다.

- ① 학회 정관 제10조(회원의 자격상실) 규정에 따라 회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명예회장의 자격 또한 상실한다.
- ② 해임에 대한 사항은 학회 정관 제14조(임원의 선출 및 해임) ⑤항을 준용한다.

제7조 (준용)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관, 시행세칙을 준용한다.

제8조 (개정) 본 규정의 개정은 재적이사 2/3이상 출석(위임장 포함)과 참석 2/3이상의 찬성(무기명 비밀투표)으로 이사회에서 의결한다.

제9조 (기록 및 폐기) 명예회장으로 선출된 회원에 대한 추천서 및 위촉에 관련된 회의 내용 및 기록 등은 총무이사가 별도로 작성하여 회장, 총무부회장, 총무이사의 서명을 거쳐 보관하며, 명예회장 후보로 추천되었으나 선출되지 못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자료상에서 관련 기록을 남기지 아니한다.

부칙 (2019.9.16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예외사항) 이 규정 제5조(절차)에도 불구하고, 이 규정의 제정일(2019.8.19.) 당시 안우회 회원(회원번호 19980060)은 명예회원으로 선출된 것으로 한다.

부칙 (2022.8.25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<별첨 서식>

명예회장추천서

- 회원번호 : (입회일:)
- 성 명 :
- 소 속 :
- 직 위 :

상기 인을 한국철도학회 명예회장으로 추천합니다.

20 년 월 일

추천인 소속·직위: 전임회장	소속·직위: 총무 부회장
성 명: 홍길동 (인)	성 명: 홍길동 (인)
소속·직위: 감사	소속·직위: 학술 부회장
성 명: 홍길동 (인)	성 명: 홍길동 (인)
소속·직위:	소속·직위: 편집 부회장
성 명: (인)	성 명: 홍길동 (인)
소속·직위:	소속·직위:
성 명: (인)	성 명: (인)
소속·직위:	소속·직위:
성 명: (인)	성 명: (인)

※ 붙임: 공적서 1부

한국철도학회 귀중

공적서

성 명		생년월일	(만 세)
소 속		직 위	
공적종류	한국철도학회 명예회장 후보 추천 (●)		
공적 사항 (주요 활동 및 업적등)	※ 상세기재		

※ 공적서는 최대 2페이지 이내로 작성 요망